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해양수산부 소관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최 선 영

[해양수산부 소관]

I.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반영한 해양수산부의 2025년 총수입 규모는 본예산과 추경안 모두 1조 3,449억원으로 동일함.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 현황 】

(단위 : 억원)

수입	2025년			
	본 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총수입	13,449	13,449	-	-

※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도 추경안을 반영한 해양수산부의 2025년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 6조 7,816억원 대비 262억원(0.4%) 증액된 6조 8,078억원임.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 현황 】

(단위 : 억원)

수입	2025년			
	본 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총지출	67,816	68,078	262	0.4%

※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도 추경안을 반영한 해양수산부의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3조 560억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예산안 현황 】

(단위 : 억원)

수입	2025년			
	본 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합 계	30,560	30,560	-	-
일반회계	4,231	4,231	-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2	322	-	-
교통시설특별회계	17,715	17,715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	50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8	38	-	-
수산발전기금	8,203	8,203		

※ 주: 총계기준

※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도 추경안을 반영한 해양수산부의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8조 4,10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62억원(0.3%) 증가하였음.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 】

(단위 : 억원)

수입	2025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B-A)/A
합 계	83,843	84,105	262	0.3
일반회계	34,203	34,265	62	0.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6,711	16,911	200	1.2
교통시설특별회계	17,715	17,715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392	6,392	-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618	618	-	-
수산발전기금	8,204	8,204	-	-

※ 주: 총계기준

※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2개 세출 사업을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62억원 증액하였음. 각 사업별로 살펴보면,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사업은 어선원 구명조끼 보급을 위한 것으로,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에 62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은 추석 등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역사업인 ‘상생활인지원 사업’에 200억원을 증액하였음.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세출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

회계	세부사업명	'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A)	추경안 (B)	증감 (B-A)	(B-A) /A
총 계		138,123	103,914	130,094	26,180	25.2
일반회계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1,802	2,166	8,346	6,180	285.3
농특회계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136,321	101,748	121,748	20,000	19.7

※ 주: 총계 기준
 ※ 자료: 해양수산부

II. 검토의견

1. 총괄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 최근 경북, 경남, 울산, 전북, 충북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와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와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 심화, 내수 회복 지연으로 인하여 수출기업의 부담 경감,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감소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수산 분야에서도 경북 영덕, 안동 등 지역을 중심으로 선박 39척(어선 29척 전소, 일반 10척), 어망 84개(3.79km²), 양식장 5개소(1개소 전소), 가공업체 3개소 전소, 어가 내 시설 피해 등 총 19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¹⁾.

□ 이에 정부는 산불, 여객기 사고, 싱크홀 발생 등 ①대국민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②글로벌 관세충격과 반도체·AI를 둘러싼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통

1) 2025.4.15. 15시 피해상황 집계 기준

상·산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③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2025년 4월 22일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 편성규모는 총 12.2조원(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으로, 재해·재난 대응에 3.2조원, 통상·AI지원에 4.4조원, 민생 지원에 4.3조원, 그 밖에 국제행사 및 국채이자 등에 0.2조원이 편성됨.
- 정부는 사업 반영 기준과 관련,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하였으며, 세계잉여금, 기금자체자금 등 가용재원 4.1조원과 추가 국채 발행 8.1조원 등을 재원으로 하였다고 밝힘.

【 2025년 추경예산안 편성분야 개관 】

구 분	사업내용	규모
재해·재난대응	신속한 산불피해복구 지원	1.4조원 증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1.7조원 증
	항공 및 노후 하수관로·도로(SOC) 안전투자	0.2조원 증
통상 및 AI 지원	통상 리스크 대응	2.1조원 증
	국내 AI 생태계 혁신	1.8조원 증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0.5조원 증
민생지원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	2.6조원 증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	1.6조원 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0.2조원 증

※ 자료: 기획재정부

□ 이 중 해양수산부의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262억원(순증)으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에 62억원,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에 200억원이 편성됨.

1)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어선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비 보급을 위하여 전체 어선원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²⁾에 62억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전체 어선원 추산치인 10만 3,000명을 대상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단가 약 15만원으로 산출)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국비예산(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20%)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한 것임.

2)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수산물 물가 안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석 및 김장철 등 수산물이 대량으로 필요한 시기에 맞추어 수산물 할인행사를 확대하기 위한 수산물상생할인지원사업에 200억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전국 판매처에서 수산물 가격을 최대 50%(1만원 한도, 명절 등 필요 시에는 2만원 한도)의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온·오프라인 할인 지원’ 및 전통시장에서 최대 30%

2) 일반회계-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3132-304)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누리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액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 세출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A)	집행액 현황 (4월 기준)	제1회 추경안 (B)	증감 (B-A)	(B-A)/ A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3132-304)	1,802	2,166	1,732	8,346	6,180	285.3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	-	-	6,180	6,180	순증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40)	136,321	101,748	51,463	121,748	20,000	19.7
수산물상생할인지원	133,773	100,000	51,369	120,000	20,000	20.0

※ 주: 총계 기준

※ 자료: 해양수산부

2) 총괄의견

-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³⁾에 의하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③ “법

3)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여야 함.

-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요건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차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것(시급성), ② 예비비 집행 또는 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 극복이 어려울 것(보충성), ③ 추경예산안 편성 사유를 해소하는 데 적합한 사업을 선정·편성할 것(적합성), ④ 당해연도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편성할 것(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들 수 있음.

□ 따라서, 추경예산안이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편성 배경이 상기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는데,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 개요를 보면,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을 추경의 편성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대규모 재해 발생’ 및 ‘경기침체’ 등에 근거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제출한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 사업의 경우, 구명조끼 한시보급은 대규모 재해 극복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전반적인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편성된 것으로 보이고, 수산물 상생할인지원은 수산물 할인행사 등을 통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민생경기 회복을 위

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편성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하에서는 개별 세부사업별로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음.

2.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 구명조끼 적시 보급을 위한 관리 필요 등

- 해양수산부는 구명조끼의 보급량 확대에 대비하여 추경예산안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업체의 생산능력을 면밀히 확인·관리하고, 어선사고에 취약한 선박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등 어선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보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사업⁴⁾은 어선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연근해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선안전장비를 보급하고,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실시해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85.3%인 61억 8,000만원이 증액된 83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사업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1,802	2,166	8,346	6,180	285.3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	-	6,180	6,180	순증

4) 회계(기금)-세부사업: 일반회계-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3132-304)

(나) 검토의견

-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사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보급, 안전조업교육 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는 내역사업인 어선안전장비지원 사업을 통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VHF-DSC 등), 자동소화설비, 구명조끼 등 어선안전조업에 필요한 전기·구명·소방 등의 어선 설비를 지원해 왔음.
- 어선안전장비지원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으로 추진되고 있음.
- 추경예산안으로 도입되는 신규 내역사업인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은 상기 어선안전장비지원 사업의 일부로 추진되던 구명조끼 보급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확대 실시하려는 것으로,

연근해어선원에게 착용 및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자체 보조사업(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으로 추진될 계획임.
-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수협의 어선원 정책보험에 가입한 어선원을 기준으로 대상자 10만 3,000명을 산정하였고, 팽창식 구명조끼(단가 15만원) 및 국고보조 비율(40%)를 곱하여 총 62억 원 을 편성하였음.

【 2025년도 추경예산안 산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예산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산출내역
6,180	○ 지자체경상보조(330-01) : 6,180백만원 가.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103,000\text{명} \times 15\text{만원} \times 40\% = 6,180\text{백만원}$ * (2인 이하, 3톤미만 어선) 40,641명 / (3~10톤 미만 어선) 38,293명 / (10톤 이상 어선) 24,215명

자료: 해양수산부

□ 구명조끼의 효용성과 관련하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 (2019~2023년)간 인명피해가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전체 해양사고 사망·실종자의 약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어선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의 구비·착용의 효용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그동안 본 세부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어선안전장비 중 하나로 구명조끼를 포함시켜 왔으나, 높은 자부담율(40%)과 본 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수요가 구명조끼가 아닌 고가 장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점,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의 경우 착용 및 거동이 불편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신청이 저조한 점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21년 3,076벌, 2022년 3,440벌, 2023년 2,129벌, 2024년 1,651벌로 보급량이 정체 또는 감소되어 왔음.

【 최근 4년(2021~2024년)간 어선안전장비지원 세부 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어선안전장비지원 예산	872	872	697	697
V-PASS보급(대)	480	391	267	243
VHF-DSC(대)	132	59	51	29
자동소화설비(대)	31	32	48	69
구명조끼(벌)	3,076	3,440	2,129	1,651
기타설비(대)	1,123	355	562	562
총 지원받은 척수	1,824	1,299	1,042	1,105

자료: 해양수산부

□ 그런데 2025년 10월 시행 예정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11호, 2025.10.19.시행)의 경우 구명조끼 의무착용의 범위를 기존 기상특보 발효시에서 기상특보 발효시 및 승선인원이 2인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이 경우 기상특보와 무관)까지로 확대하여 구명조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팽창식 구명조끼의 경우 기존 구명조끼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착용 및 거동 불편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구명조끼 보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추경예산안은 구명조끼 보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어선의 전반적인 재난·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국내 구명조끼 형식별 비교】

구분	국제기준형(SOLAS TYPE)		착용성 향상형 구명조끼 (팽창식)	어선용 구명의 (팽창식)
	구명조끼 (고체식)	구명조끼 (팽창식)		
사진				
장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력성능	부피가 작아 착용 용이	①중량 제한 및 부력 성능 완화로 제품 경량화 가능 ②작업성 시험 및 재료시험 추가로 어로작업에 적합	
단점	①부피가 커서 상시 착용 불편 ②최대승선인원이 많은 어선의 경우 보관장소 및 정비 미흡	①팽창 가스실린더 정비(교체) 필요 ②비상 시 자동팽창 미작동에 대한 위험부담	SOLAS TYPE(고체식·팽창식) 비교하여 부력성능이 떨어짐	

□ 다만, 추경예산안의 경우 기존 보급 물량(2024년 기준 1,651벌)을 크게 상회하는 10만여 벌의 구명조끼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명조끼 중에서도 팽창식 구명조끼라는 특정 유형을 보급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업체의 생산역량에 따라 연내 집행 여부가 달라질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실제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별로 어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보급하는 과정에서 생산 지연 및 물량 부족으로 인한 집

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의 생산역량을 면밀히 확인·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급격한 공급 확대로 인하여 구명조끼의 성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양수산부가 보급하려는 착용성 향상형 팽창식 구명조끼는 2022년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해 2023년 「어선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취득한 후 법정장비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팽창식 구명조끼를 제작·판매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취득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업체별로 생산여건에 차이는 있으나 대략 연간 20만 벌의 구명조끼를 생산할 수 있어 연내 보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다만 어업인들의 수요가 특정 모델에 집중될 경우 일부 생산부담이 발생할 수는 있다는 의견임.

【국내 구명조끼 업체별 개발 현황】

구분	고체식		팽창식					
제조사	해상산업		정우레스폴	우성아이비	스페이스	한국물자조달(주)	엠제이컴퍼니	몽블랑클라임
제품사진								
모델	HS-2	HS-3	JW-9001	WSML01	SP-2020	KCS-A007	MJ-20	MBL-19
가격	24천원	24천원	295천원	187천원	130천원	130천원	130천원	130천원

자료: 해양수산부

- ☐ 다음으로, 구명조끼는 구조가 개시될 때까지 사고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2인 이하 승선 어선이나 원거리

에서 조업하는 연근해어선과 같이 어선사고에 취약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려운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를 우선 보급하는 등, 조업형태 및 사고발생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해양수산부는 이미 기존 어선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도 소량이지만 구명조끼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의 경우 자부담율(40%)이 추경예산안 사업(20%)보다 높아 추경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추경예산안의 집행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 예산 집행에 혼선이 초래되지 않도록 기존 예산에 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의 중복 지원이나 집행 부진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이처럼 자부담율을 본예산 대비 20%P 낮게 설정한 것은, 해양수산부는 전체 어선원에 대하여 구명조끼 무상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점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거나, 무상 보급을 실시하는 방안에 관하여 재원확보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당정협의회 안전사고 방지대책 보고에서 '全 어업인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확대 발표('25.2.21)

2)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의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등 필요

- 해양수산부는 상생할인지원사업이 온라인 매체 사용이 원활한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홍보 강화, 사업 접근성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 수요 및 사업별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자체 상생할인 사업의 사업비중 확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및 추경안 개요

□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⁶⁾는 어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기적 수요개발과 상생할인 지원 등을 통하여 수산물의 소비촉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9.7%인 200억원이 증액된 1,217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2025년도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사업 추경안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본예산(A)	추경안(B)	증감(B-A)	%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136,321	101,748	121,748	20,000	19.7
수산물상생할인지원	133,773	100,000	120,000	20,000	20.0

6) 회계(기금)-세부사업: 농특회계-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3044-340)

(나) 검토의견

□ 수산업 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사업은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수산물 소비촉진’, 언론 광고, 기획기사, 홍보영상 제작·송출 등 수산 정책을 홍보하는 ‘수산정책홍보’, 온·오프라인(마트·시장 등) 및 지자체 연계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① 전국 오프라인 판매처 및 온라인몰에서 대중성 어종(6종) 대상 할인 지원, ②명절, 가정의 달 등에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③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발행, ④지자체 여건에 맞는 직거래 장터, 지역행사 등과 연계된 수산물 할인 지원 사업으로 구성됨.

【 수산물 상생할인사업 예산 개요(2025년도 본예산) 】

구 분		내 용
온·오프라인	예산	520억원
	사업내용	○ 설·추석 명절 등 소비 집중 시기에 매월 행사 추진 ○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체감 물가 완화 등을 위해 대중성어종(6종) 등 행사별로 품목을 결정 ○ 20% 할인(1인 당 최대 1만원 한도) 원칙을 적용 * 다만, 명절 물가 관리 및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시 한시적으로 한도 상향(1만원→2만원)

구 분		내 용
전통 시장	예산	300억원
	사업내용	○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1인 2만원 한도)
제로페이	예산	80억원
	사업내용	○ 제로페이(한국간편결제진흥원)와 연계하여 20% 선(先) 할인 온라인 상품권 발행(구매 금액 20만원, 할인액 4만원 한도) *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권을 수산물 판매업체(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지자체	예산	10억원
	사업내용	○ 지자체 여건에 맞는 수산물 할인행사,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할인율 20%) * 국비 50%:지방비 50%
홍보 운영비	예산	90억원
	사업내용	○ 대행용역, 홍보용역, 유통사 가격 모니터링, 소비자 만족도 조사용역, 효과분석 용역, 법률자문료, 운영관리비 등

자료: 해양수산부

□ 추경예산안은 해당 내역사업에 추석 할인행사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할인(100억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100억원) 등 200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안 비교 】

구 분	본예산	추경예산안	추경 산출내역
전체예산	1,000억원	1,200억원 (200억원 증액)	
온·오프라인 할인	520억원	620억원 (100억원 증액)	할인행사 6회→ 7회 평균 86.7억원→ 88.6억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300억원	400억원 (100억원 증액)	환급행사 4회→ 5회 평균 75억원→ 80억원
제로페이	80억원	좌동	-
지자체 상생할인	10억원	좌동	-

구 분	본 예산	추경 예산안	추경 산출내역
홍보·운영비	90억원	좌동	-

자료: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와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수산물 물가상승 및 소비심리 위축 우려가 있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으로 인하여 2025년 4월 기준 본예산의 약 50%가 집행되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특히 추석과 같이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에 대중성 어종이나 김 등 주요 소비품목에 대하여 할인행사를 진행해 수산물 수급과 물가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동 사업은 수산물 할인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동안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을 경감시키고 수산물 판매를 진작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짐.

또한, 연내 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제고 세부사업의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25년의 경우에도 하반기에 여름맞이 특별전, 추석 맞이 할인대전, 가을맞이 특별전,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명절 및 계절별 할인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추경예산안의 집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최근 4년간(2022~2024년) 세부사업 집행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			집행	
	본예산 (A)	추경, 이월금 등 (B)	예산현액 (A+B)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B)
'22년	218.28	210	428.28	617.69	144.2
'23년	660.28	(-)	660.28	1,591.86	241.1
'24년	1,337.73	(-)	1,337.73	1,335.71	98.0
'25.4월 현재	1,017.48	(-)	1,017.48	514.63	50.6

자료: 해양수산부

【 2025년 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 일정(안) 】

구분	행사명	일정	기간
온·오프라인 행사 (8회)	설 특별전	1.9(목)~2.2(일)	업체별 2주
	봄맞이 특별전	2.12(수)~3.2(일)	업체별 2주
	4월 수산인의 날* 특별전 * 4.1일	3.19(수)~4.6(일)	업체별 2주
	5월 가정의 달 특별전	4.30(수)~5.18(일)	업체별 2주
	여름맞이 특별전	6.11(수)~6.29(일)	업체별 2주
	추석 성수품 할인대전	9.24(수)~10.12(일)	업체별 2주
	가을맞이 특별전	10.22(수)~ 11.9(일)	업체별 2주
	코리아수산페스타(김장철)	11.12(수)~30(일)	업체별 2주
찾아가는 직거래 장터	온·오프라인 행사 기간 중 직거래장터 운영	물가·수급 상황 등에 따라 실시	1~2일
	* 수산물 생산단체, 수산물 유통 관련 단체가 협업하여 운영		
온누리 상품권 (5회)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1.23(목)~27(월)	5일
	3월 봄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3.26(금)~4.1(일)	5일
	5월 가정의 달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5.9(금)~13(화)	5일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10.1(수)~5(일)	5일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11.19(수)~23(일)	5일
제로페이 (8회)	-	설, 추석, 2~7월	4주
	* 예산 집행 일정 등을 고려, 9월까지 발행(상품권은 '25.12.15일까지 사용 가능)		

자료: 해양수산부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상생할인지원에 대한 고령층의 인지도가 낮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계층일수록 할인행사 정보나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발행 등의 서비스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할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으므로⁷⁾,

추경예산안으로 확대되는 상생할인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사업 등 특정 사업 유형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음으로, 현재 상생할인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유형별 예산배분 현황을 보면,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지원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에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본예산 820억원+추경 200억원 증액)되어 있고,

지자체 상생할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액의 1% 안팎인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향후 지자체 수요, 사업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3.11.